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0월 1일

군산시 규칙 제902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간”을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으로 한다.

별표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 <u>보조기간에</u> 두는 직렬별 정 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보조기관에</u> -----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개정 2026. .>

[총괄]

계급	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의회사무국		
합계		1683	995	117	98	16	13	143	260	41		
정무직계		1	1									
차관 (급)	소계	1	1									
	정무	1	1									
일반직계		1644	986	117	68	16	13	143	260	41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1							1		
	과학기술	1		1								
	행정·과학기술	6	6									
	행정·과학기술·농촌지도	1			1							
5급	소계	82	43	5	3	1	1	10	16	3		
	행정	17	17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 · 공업 · 환경	2	2									
	행정 · 공업 · 시설	2	2									
	행정 · 공업 · 방송통신	1	1									
	행정 · 농업 · 농촌지도	1			1							
	행정 · 녹지 · 시설	1	1									
	행정 · 해양수산 · 시설	3	3									
	행정 · 보건 · 식품위생	1		1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행정 · 시설 · 방재안전	1	1									
	농업 · 수의 · 농촌지도	1			1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 시설	2						2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녹지	2					2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보건	1						1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환경	1					1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시설	5					2		3			
	행정 · 사회복지 · 해양수산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간호	1						1				
	행정 · 사회복지 · 의료기술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 방송통신	1						1				
	행정 · 공업 · 농업 · 녹지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농업 · 수의 · 농촌지도	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 시설	2				1	1					
	행정 · 농업 · 간호 · 시설	1					1					
	행정 · 농업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보건 · 의료기술 · 의무 · 간호	1		1								
6급	소계	33 7	21 3	21	22	3	3	31	35	9		
	행정	68	53						11	4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7	3						4			
	공업	3	2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진료	6		6								
시설	15	15									
시설관리	1	1									
운전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2	10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4	20				1	2	11			
행정·사서	9	9									
행정·공업	5	4			1						
행정·농업	12			6			4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5	5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32	32									
행정·학예연구	3	3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6	6									
농업·수의	2			2							
농업·시설	1	1									
농업·농촌지도	4			4							
녹지·시설	2	2									
보건·식품위생	2		2								
식품위생·위생	1	1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1	1	1		
행정·세무·공업	1							1			
행정·세무·농업	9					1	7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5	4						1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농업·농촌지도	1			1							
	공업·환경·시설	2	2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4			4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 수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공업·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녹지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1								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행정·숙기·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7급	소계	49 7	30 3	47	16	4	4	36	62	25		
	행정	14 5	10 7	1	1	3	1	6	20	6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36	4				1	10	21			
	사서	7	7									
	숙기	1								1		
	공업	14	13			1						
	농업	7			7							
	녹지	5	5									
	수의	2			2							

해양수산	7	5					2				
보건	2		2								
식품위생	1		1								
간호	9		9								
보건진료	8		8								
환경	6	6									
시설	36	35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1	1									
운전	6	3	1						2		
행정·세무	24	18						6			
행정·전산	6	6									
행정·사회복지	44	31					2	1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9	5						4			
행정·농업	15			4		1	10				
행정·녹지	3	1					2				
행정·해양수산	5	5									
행정·보건	8	1	7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22	16				1	4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해양수산	1	1									
공업·환경	6	6									
공업·시설	6	6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시설	1	1									
식품위생·위생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방송통신	1		1								
	행정 · 식품위생 · 위생	1		1								
	공업 · 보건 · 환경	1	1									
	보건 · 식품위생 · 위생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5	1	14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 농업	1								1		
	행정 · 전산 · 공업 · 방송통신	3	1							2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 방송 통신	2								2		
	행정 · 시설 · 방재안전 · 방송 통신	1	1									
8급	소계	42 4	27 1	35	14	6	2	27	67	2		
	행정	10 1	73			2	1	6	19			
	세무	6	5			1						
	전산	2	2									
	사회복지	22	6				1	4	11			
	사서	7	7									
	공업	18	16	1	1							
	농업	4			4							
	녹지	4	4									
	해양수산	8	6					2				
	보건	8		8								
	의료기술	7		7								
	간호	19	1	5					13			
	보건진료	4		4								
	환경	3	3									
	시설	42	42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2	2									
	운전	8	7	1								
	건축운영	1	1									
	행정 · 세무	12	10			2						
	행정 · 전산	1	1									
	행정 · 사회복지	41	17					3	20	1		
	행정 · 사서	2	2									
	행정 · 공업	9	8			1						
	행정 · 농업	17			5			8	4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3	3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간호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0	23		2			4		1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5	5									
	공업·시설	4	4									
	공업·방재안전	1	1									
	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식품위생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29 3	14 8	8	12	2	3	39	80	1		
	행정	62	30		1	1	1	8	21			
	세무	11	11									
	전산	3	3									
	사회복지	68	4				2	19	43			
	사서	7	7									
	공업	8	7			1						
	농업	8			7			1				
	녹지	1	1									
	해양수산	4	2					2				

	보건	5		5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22	22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1	1									
	운전	3	2	1								
	전기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사육운영	1	1									
	사무운영	10	9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8	10				4	14				
	행정·사서	2	2									
	행정·숙기	1							1			
	행정·공업	7	7									
	행정·농업	6			3		2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3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농업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행정·해양수산·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 통신	1	1									
별정직계		4	4									
6급 상당	소계	3	3									
	별정	3	3									
7급 상당	소계	1	1									
	별정	1	1									
전문경력관계		5	4		1							

나군	소계	4	3		1							
	전문경력관	4	3		1							
다군	소계	1	1									
	전문경력관	1	1									
지도직계		28			28							
지도 관	소계	2			2							
	농촌지도	2			2							
지도 사	소계	26			26							
	농촌지도	26			26							
연구직계		1			1							
연구 사	소계	1			1							
	농업연구·농촌지도	1			1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0월 1일

군산시 훈령 제476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훈령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錄]

- 13 -

[본청]

[illegible]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첨 1] 개정<2026. 2. >

[附]

[illegible]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개정<2026. 2. >

[본청]

[illegible]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개정<2026. 2. >

[본청]

[illegible]

[부칙]

- 18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2] 개정 <2026. 2. .>

[직속기관]

계급	직 렌	합 계	보 건 소 계	보 건 행 정 과	감 염 병 관 리 과	건 강 관 리 과	위 생 과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정 책 과	먹 거 리 정 책 과	농 촌 지 원 과	기 술 보 급 과	동 물 정 책 과		
합 계		215	117	56	18	25	18	98	22	18	25	19	14		
일 반 직 계		185	117	56	18	25	18	68	22	18	6	8	14		
4급	소 계	2	1	1				1	1						
	과학기술	1	1	1											
	행정·과학기술·농촌지도	1						1	1						
5급	소 계	8	5	2	1	1	1	3	1	1			1		
	의무	1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1								
	행정·보건·간호	1	1	1											
	농업·수의·농촌지도	1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1									
6급	소 계	43	21	10	3	5	3	22	5	6	4	4	3		
	보건진료	6	6	6											
	행정·농업	6						6	1	4			1		
	농업·수의	2						2					2		
	농업·농촌지도	4						4	1		2	1			
	보건·식품위생	2	2				2								
	행정·농업·시설	2						2	2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1	2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1								
	공업·농업·농촌지도	1						1			1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4						4			1	3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3	2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2] 개정 <2026. 2. .>

[직속기관]

계급	직	합	보 건 소 계	보 건 행 정 과	감 염 병 관 리 과	건 강 관 리 과	위 생 과	농 업 기 술 센 터 계	농 업 정 책 과	먹 거 리 정 책 과	농 촌 지 원 과	기 술 보 급 과	동 물 정 책 과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1	1	1									
7급	소 계	63	47	25	10	4	8	16	7	3		1	5		
	행정	2	1	1				1		1					
	농업	7						7	4	2			1		
	수의	2						2					2		
	보건	2	2	1		1									
	식품위생	1	1				1								
	간호	9	9	2	5	2									
	보건진료	8	8	8											
	시설	1						1	1						
	운전	1	1		1										
	행정·농업	4						4	2			1	1		
	행정·보건	7	7	3			4								
	농업·수의	1						1					1		
	식품위생·위생	1	1				1								
	행정·보건·방송통신	1	1	1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4	14	9	4	1									
8급	소 계	49	35	17	4	9	5	14	5	3	1	2	3		
	공업	2	1	1				1			1				
	농업	4						4	1			2	1		
	보건	8	8	2		3	3								
	의료기술	7	7	4		3									
	간호	5	5	1	2	2									
	보건진료	4	4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2] 개정 <2026. 2. .>

[직속기관]

계급	직	합	보	보	감	건	위		농	농	먹	농	기	동		
	별	계	건	건	염	강	생		업	업	거	촌	술	물		
	계	계	소	행	병	관	관		기	정	리	지	보	정		
	과	과	과	정	관	리	과		술	책	정	원	급	책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센	책	책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터	과	과	과	과	과		
	운전	1	1	1												
	행정·농업	5							5	1	2			2		
	행정·간호	1	1			1										
	행정·시설	2							2	2						
	보건·식품위생	2	2				2									
	보건·간호	2	2	1	1											
	의료기술·간호	1	1	1												
	행정·농업·식품위생	1							1		1					
	행정·농업·시설	1							1	1						
	행정·보건·간호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2												
	소 계	20	8	1		6	1		12	3	5	1	1	2		
9급	행정	1							1					1		
	농업	7							7	3	3		1			
	보건	5	5			5										
	의료기술	1	1			1										
	운전	1	1	1												
	행정·농업	3							3		2			1		
	행정·보건	1	1				1									
	공업·농업	1							1			1				
	전문경력관계	1							1				1			
나군	소 계	1							1				1			
	전문경력관	1							1				1			
지 도 직 계		28							28			19	9			
지도관	소 계	2							2			1	1			
	농촌지도	2							2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2] 개정 <2026. 2. .>

[직속기관]

계급	직	합	보	보	감	건	위		농	농	먹	농	기	동		
		계	건	건	염	강	관	생	업	업	거	촌	술	물		
			소	행	병	관	리		기	정	리	지	보	정		
			정	정	관	리			술	책	책	원	급	책		
			과	과	과	과			센	과	과	과	과	과		
			계	과	과	과	과		터	계	과	과	과	과		
지도사	소 계	26							26			18	8			
	농촌지도	26							26			18	8			
연구 직 계		1							1				1			
연구사	소 계	1							1				1			
	농업연구 · 농촌지도	1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의회]

계급	직	별	합 계	의 회 사 무 국 계	의 회 사 무 국 계														
합 계			41	41	41														
임 반 직 계			41	41	41														
4급	소 계		1	1	1														
	행정		1	1	1														
5급	소 계		3	3	3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3	3														
6급	소 계		9	9	9														
	행정		4	4	4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1														
	행정·농업·시설		1	1	1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1	1	1														
	행정·건설·공업·시설		1	1	1														
	행정·숙기·시설·방송통신		1	1	1														
7급	소 계		25	25	25														
	행정		8	8	8														
	숙기		1	1	1														
	운전		2	2	2														
	행정·시설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1														
	행정·공업·환경		1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1														
	행정·복지·시설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보건·환경		1	1	1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1	1	1														
	행정·건설·공업·방송통신		2	2	2														
	행정·사회복지·농업·방송통신		2	2	2														
8급	소 계		2	2	2														
	행정·사회복지		1	1	1														
	행정·시설		1	1	1														
9급	소 계		1	1	1														
	행정·숙기		1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개정 <2026. 2. .>

[음면동]

계급	직	합	계	읍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동	해	월	삼	신	중	홍	조	결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합 계			416	13	13	143	14	13	13	13	16	13	13	14	20	14	260	11	14	14	14	12	15	20	15	15	12	24	17	19	20	20	18
일 반 직 계			416	13	13	143	14	13	13	13	16	13	13	14	20	14	260	11	14	14	14	12	15	20	15	15	12	24	17	19	20	20	18
5급	소 계	27	1	1	10	1	1	1	1	1	1	1	1	1	1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1			1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복지	2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환경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개정 <2026. 2. .>

[음면동]

[illegible]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개정 <2026. 2. .>

[읍면동]

계급	직명	합계		읍계	읍구	면계	읍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	읍도	읍서		동계	해신	월명	삼학	신풍	중앙	홍남	조촌	결암	구암	개정	수송	나우1	나우2	나우3	소통	미성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1																										
	행정·공업·환경	1																1															1			
	행정·농업·복지	1				1								1																						
	행정·농업·시설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	1				1		1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	1				1									1																					
	행정·세무·공업·농업	3		1	1		2		1	1																										
	행정·세무·농업·복지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1																				
	행정·농업·복지·시설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1																				
	7급	소계	102		4	4		36	3	2	3	3	7	3	3	3	5	4		62	3	4	3	3	2	3	4	4	2	2	6	5	6	6	5	4
	행정	27		1	1		6	1			1	2	1			1		20	2	1	1	2	1	2		2	1	1		2		2	2	1		
	사회복지	32		1	1		10	1	1	1	1	1	1	1	1	1		21	1	1		1	1		2	2		1	2	3	2	1	2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개정 <2026. 2. .>

[읍면동]

계급	직명	합계		읍	목		면	목	회	임	서	대	개	성	나	목	목		동	해	월	삼	신	중	홍	조	결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해양수산	2					2								2																					
	행정·세무	6																	6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13					2				1				1				11		2	2			1					2		2	1		1	
	행정·공업	4																	4							1				1		1	1			
	행정·농업	11		1	1		10		1	1	1	2	1	1	1	1	1																			
	행정·복지	2					2							1	1																					
	행정·시설	5		1	1		4	1		1		1					1																			
8급	소계	96		2	2		27	2	4	2	2	2	2	3	3	4	3		67	1	4	4	3	2	4	5	3	6	3	6	3	5	6	6	6	
	행정	26		1	1		6	1	2	1			1	1					19		1	1	1	1	1	2	1		2	2		1	2	2	2	
	사회복지	16		1	1		4				1	1			1		1		11		2	2			2	1		1				1	1		1	
	해양수산	2					2								2																					
	간호	13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23					3							1	1	1			20	1			1	1		1	1	3	1	2	2	2	1	3	1	
	행정·농업	12					8	1	1	1		1		1	1	1	1		4								1		1			1		1		
	행정·시설	4					4		1		1		1				1																			
9급	소계	122		3	3		39	5	3	4	4	3	4	3	4	6	3		80	4	3	4	5	5	5	8	5	4	4	8	6	5	5	5	4	
	행정	30		1	1		8	1		1	2	1	1	1	1				21	1	1	2	2	1	1	3	1	2	1	2		1	1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개정 <2026. 2. .>

[음면동]

[illegible]

맑은 군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0월 1일

군산시 훈령 제477호

맑은 군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맑은 군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맑은 군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이하 “청렴도 혁신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렴도 평가 결과 기반 ‘청렴 혁신 보고서’ 발행

6. 시민사회 대상 청렴 정책 의견 수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언

7. 주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

운동 추진

제3조제1항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청렴도 혁신위원회”로, “14명 이내의 단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은 단원”을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단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장은 맑은 군산 추진단”을 “위원장은 청림도 혁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부득이한”으로, “단장이 미리”를 “위원장이 미리”로, “단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청림도 혁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단원”을 “위원”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단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청림도 혁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맑은 군산 추진단 단원”을 “청림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촉단원 임기 등)”을 “(위촉위원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촉단원”을 각각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청림도 혁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청림도 혁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청림도 혁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맑은 군산 추진단 단원”을 “청림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촉단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맑은 군산 추진단”을 “청림도 혁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000000 000

귀하를 군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임 기 : . . . ~ . . .)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로 활동하는 동안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사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익을 위한 제안과 발언만 하겠습니다.

하나,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청렴함과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제보서

제 목				
작 성 자	성 명	(서 명)	전 화	
	소 속			
문 제 점 (현 황) 및 제 안 (제 보) 내 용				
상기 사항을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 회의록

일시(회차)	년 월 일 (회차)	장소	
주요안건	◎ ◎		
회의내용			
기타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맑은 군산 추진단 구성 및 운영</u> <u>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맑은 군산 추진단</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u>맑은 군산 추진단</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생략) 제3조(구성) ① <u>맑은 군산 추진단</u>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 총 <u>14명 이내의 단원</u>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민간부	<u>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u> 제1조(목적) ----- <u>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u>-----. 제2조(기능) <u>군산시 청렴도 혁신위원회</u>(이하 “<u>청렴도 혁신위원회</u>”라 한다)는-----. 1. ~ 4. (현행과 같음) 5. <u>청렴도 평가 결과 기반 ‘청렴 혁신 보고서’ 발행</u> 6. <u>시민사회 대상 청렴 정책 의견 수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언</u> 7. <u>주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u> 8.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 <u>청렴도 혁신위원회</u>는----- -- <u>20명 이내의 위원</u>-----

문으로 하고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부문 단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생략)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맑은 군산 추진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맑은 군산 추진단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감사담당관이 그 직을 수행한다.

제6조(위촉 및 해촉) ① 민간 위촉 단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

② 위원장은 위원 -----.

③ ----- 위원-----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청렴도 혁신위원회를-----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
----- 위원장이
미리 ---- 위원-----
-----.

제5조(간사) 청렴도 혁신위원회-----

-----.

제6조(위촉 및 해촉) ① -----
위원----- 별지 제1호서식-----.

② ----- 위촉위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맑은 군산 추진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밖에 맑은 군산 추진단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촉단원 임기 등) ①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단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후임자를 위촉한다.

제8조(의무) ① 맑은 군산 추진단 전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② 모든 단원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성원은 이 운영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청렴도 혁신위원회 -----

3. ---- 청렴도 혁신위원회 위
원-----

제7조(위촉위원 임기 등) ① 위촉위원-----
-----.

② 위촉위원 -----
-----.

제8조(의무) ① 청렴도 혁신위원회 -----

-----.

② --- 위원-----

-----.

③ ----- 별지
제2호서식-----
-.

제9조(회의 개최) ① 맑은 군산 추진단 정기 회의는 연4회 개최한다.

② (생략)

제10조(회의 운영) ① (생략)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맑은 군산 추진단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사항 등 처리) ① 맑은 군산 추진단 단원은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안 및 제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지원 등) 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맑은 군산 추진단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간담회·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개최) ① 청렴도 혁신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

제11조(의견의 청취) 청렴도 혁신위원회는-----

-----.

제12조(제안사항 등 처리) ① 청렴도 혁신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 등) ① -----
----- 위촉위원 -----

-----.

② ----- 청렴도 혁신위원회-----

-----.

군산시 공고 제2026-2271호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4급” 이상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 이상으로 수정 (안 제2조제4항 개정)
-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 수정 및 추가 (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 (안 제6조제9항 신설)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146조제8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 : 기획예산과(법무의정), 여성가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 라.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 마.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목) ~ 10. 22.(목)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시민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전화) 063-454-2473 / (FAX) 063-454-6009
(전자우편) shield1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시민납세과 납세지원계(063-454-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정한 자

제6조제4항에서 제7항을 각각 제5항에서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연임 기간을 포함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수신 : 군산시장

참조 : ○○과장

발신 :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본 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	
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이상 경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210mm×297mm(백상지 80g/㎡)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군산시장

참조 : ○○과장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본 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	
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 납 액 징 수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이상 경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붙임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급대상) ① ~ ③ (생략)	제2조(지급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 5급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세

<신 설>

④ ~ ⑦ (생 략)

<신 설>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
서 선정한 자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군산시 지방세심의위
원회의 위원에 재임하는 기간으
로 한다. 다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연임 기간을 포함한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세입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와 관련된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정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기획행정국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연락처	(063) 454 - 246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6-2273호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시행일 2023. 1. 25.) 및 2020. 12. 29.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시행일 2024. 1. 1.)의 일부 개정으로 법률상 명칭이 통합 및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
(안 제3조, 제17조)
-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안 제8조 제1항, 제14조 및 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 및 제55조제1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 의 : 기획예산과(법무의정), 여성가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 라.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마.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목) ~ 10. 22.(목)

4. 의견 제출

-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시민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전화) 063-454-2473 / (FAX) 063-454-6009

(전자우편) shield1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시민납세과 납세지원계(063-454-247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7조 본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시·군		년시·군 세입			
				결정내용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항			세액					
				가산세					
				결정액					
목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illegible]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상의일 : 노 해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 []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가산횟수	물건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계	

364mm×257mm(백상지 80g/m²)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시·군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시·군/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시 효 완 성 정 리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시·군/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 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u>지방세정보통신망</u>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 ----- ----- ----- ----- ----- ----- ----- ----- -- <u>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u> ---- ----- ----- -----.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u>가산금 및 증가산금을</u>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 ----- ----- - <u>납부지연가산세를</u>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
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
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
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
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
이 법, 영, 조례 및 규칙에 따
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
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
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납부지연
가산세를 -----
-----.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지방
세통합정보통신망 -----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단순 정비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기획행정국 시민납세과장 이석기
연락처	(063) 454 - 246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고시 제2026-13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군산시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세부현황**

지 구 명	위 치	지정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 형	등 급	면 적 (㎡)	유 형	등 급	면 적 (㎡)	
대항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 일원	붕괴위험 지역	E	1,971	붕괴위험 지역	E	1,855	지정구역 변경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자: 2026. 9. 23.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사 업 내 용	비고
대항	2023~2027.	· 급경사지 정비 1,855㎡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전라북도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513)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군산시 고시 제2026-139호

대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 칭 : 대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위치, 규모, 총사업비

가. 위 치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10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변경)

－ 흙깎기 2,447m³, 구조물 터파기 266m³, 배수관설치 L=263m,
ASP덧씌우기 포장 112m², 주택철거 1동, 부대공 1식 등

다. 총사업비 : 70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3. 1. ~ 2028. 7.

5.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포함)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7. 사업효과 분석

－ 토사유실 및 산사태,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배수로 및 사면정비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5년	'26년	'27년 이후	비고
사업내용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기본 설계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사면정비	
총 사업비	700	20	680		
· 국 비	350	10	340		
· 지방비	350	10	340		

9.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군산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	개정면 발산리	103-10	103-10	전	426	426	국 (기획재정부)					
2	개정면 발산리	103-28	103-28	전	261	261	국 (기획재정부)					
3	개정면 발산리	103-34	103-34	전	228	228	국 (기획재정부)					
4	개정면 발산리	103-35	103-35	전	281	281	국 (기획재정부)					
5	개정면 발산리	103-36	103-36	전	154	154	군산시					
6	개정면 발산리	103-64	103-64	전	294	294	김영*	개정면 발산리 103-***				
7	개정면 발산리	103-70	103-70	전	12	12	군산시					
8	개정면 발산리	103-74	103-74	전	29	29	군산시					
9	개정면 발산리	103-77	103-77	전	63	63	군산시					
10	개정면 발산리	103-81	103-81	전	69	69	군산시					
11	개정면 발산리	103-85	103-85	전	38	38	군산시					
계					1,855	1,855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군산시)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개정면 발산리	103- 64	본건물(주택1)	조적조 슬래브 지 붕	90m ²	김영*	개정면 발산리 103-***	
			현관입구	경량철골조 기타지 붕	3m ²			
			가추	경량철골조 함석지 붕	33m ²			
			주택2	조적조 함석강판지 붕	70m ²			
			창고	조적조 스텔트지붕	10.5m ²			
			대문	알루미늄 재질	1식			
			대문지주	조적조	2EA			
			화단		1식			
			바닥포장	보도블럭 등	80m ²			
			수도		1식			
			태양광설비	3KW	1식			
			지하수관정					
			관목(천리향)	H=0.5m	50주			
			철쭉	W0.5	10주			

군산시 공고 제2026-218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6-31호(2026.3.6.)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 나. 명 칭 : 군산교도소 비상대기소 세탁실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 : 182,890㎡
 - 나. 건축계획(전체)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내용
182,890	주53동/ 지하2층~지상4층	22,716.93 * 건폐율 12.42%	44,054.90 * 용적률 21.74%	금회 25동, 51동, 52동, 53동 증축 등

- (금회) 주1개동(25동)/3층 교정시설(정문접견 및 창고) 건축면적 71.74㎡ 증축, 주1개동(51동)/1층 교정시설(교도소) 연면적 39.42㎡ 증축, 주1개동(52동)/1층 교정시설(창고) 연면적 18㎡ 증축, 주1개동(53동)/1층 교정시설(창고) 연면적 18㎡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교도소장

나. 주 소 :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6. 3. 6. ~ 2026. 6. 30.(준공 2026.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구읍 옥정리	65	대	182,890	182,890	국 (법무부)					
계				182,890	182,890						